

제413회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2월21일(수)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4)
4.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
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
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9)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9)
1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6)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6)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4)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9)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9)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9)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2)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1)
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9)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8)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1)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0)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8)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6)
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3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3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3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1)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6)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9)
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2)
3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7)
4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2)
4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8)
4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1)
4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2)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7)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9)
4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20)
4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5)
4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4)
4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801)
5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05)
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33)
5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918)
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71)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518)
5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7)
5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7)
5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814)
5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48)
5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45)
6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59)
6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37)
6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8)
6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97)
6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492)
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49)
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38)
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93)
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0)
6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23)
7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40)
7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7)
7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37)
7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32)
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26)
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27)

76.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97)
77.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76)
78.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77)
79.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1)
80.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983)
81.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87)
8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4)
8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6)
8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16)
8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14)
8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471)
8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08)

상정된 안건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5) … 4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8) … 4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4) … 4
4.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 … 9
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2) … 10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 … 10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 … 11
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 12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9) … 12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9) … 15
1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 15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6) … 15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6) … 17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4) … 17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9) … 17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 17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 17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9) … 17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9) … 17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2) … 17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1) … 17
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9) … 29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3) … 29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8) … 29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1) … 29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0) … 29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8) … 29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6) ... 29
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 29
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 29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 29
3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 29
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 29
3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 29
3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1) ... 29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6) ... 29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9) ... 29
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2) ... 29
3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7) ... 29
4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2) ... 29
4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8) ... 29
4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1) ... 29
4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2) ... 29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7) ... 29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9) ... 29
4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20) ... 30

(13시38분 개의)

○소위원장 신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처음 맡게 돼서 원활한 오늘 회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오랜만에 열리고 또 21대 국회에서는 몇 번 남지 않은 여가위의 법안소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효율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여야의 모범적인 여가위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 설명,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가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과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8)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924)

(13시40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가 말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바쁘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혹시 클리어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리뷰를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소위심사 참고자료 1권 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과 관련한 업무와 역할은 교육감이 당연히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정 가능한 것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15)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11쪽입니다.

하위법령 위임과 관련해서는 위임하는 사항이 자립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진단 실시 규정 신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진단 우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과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건강진단 실시 근거를 두려는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과 다른 청소년들의 건강진단 지원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정조문 설명드리면 건강검진 규정 신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하위법령 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17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임종성 의원안은 해당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정경희 의원안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미성년자인 청소년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됩니다.

둘째, 2022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중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하여 지원센터로 연계한 청소년이 63.2%로 낮지 않으므로 충분한 홍보, 안내 등을 통해 사전동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학업을 중단한 초·중학생의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센터로 연계한 인원만 집계되고 있을 뿐 연계 인원 중 센터가 신규로 발굴하여 지원한 사례 등 연계 후 효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쪽입니다.

교육부는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므로 입법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6쪽 보시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교육지원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자립 교육지원 관련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자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다만 건강진단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학생 건강검진하고 통합 운영 추진이 되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임종성 의원님과 정경희 의원님 안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보 연계의 범위가 좀 더 넓은 정경희 의원님 안으로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청소년안전망 등을 통해서 사전동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추세 그다음에 모든 청소년에게 공정한 교육이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서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 격차를 방지할 책무 등을 생각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교육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게 여가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보의 침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면 2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서 개인정보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미연계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령기에 필요한 학업, 진로, 자립준비 등의 지원과 상담 등을 통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비율이 45.1%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내가 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나타나는 비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겠습니다. 건강진단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를 보완하면서 할 수 있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0페이지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김미애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정경희 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지금 3개 법안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 법안씩 차례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김미애 위원님 두 번째 걸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정경희·김미애 의원안부터 의견 있으신가요, 위원님?

○김미애 위원 지금 1번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의견 표명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저도 법안 자체에 동의를 하는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교육청들의 반대가 있는 것 같고. 교육청별로 다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는 찬성하는 것 같고.

교육청들이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학교로 복귀해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교육청 반대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하셨거나 아니면 법안 통과가 되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지 여가부 의견 궁금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교육청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의견을 들었고요.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견으로 변경해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요?

○정경희 위원 지금 이 법안이 논의된 시점이 몇 개월이 도과된 거예요. 그때 교육청에서 반대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교육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교육청에서도 했던 것이고, 7개 교육청인가가 이런 의견을 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교육청의 그 이후의 입장은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의 입장이 최근의 입장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담당 국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청소년정책관 김권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의견은 작년에 나왔던 의견이고요. 교육위에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발의해서 24년 1월 4일 날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법에도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우리 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도 교육감이 학업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 해서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미 별개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하나만 덧붙이면 이 발의한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징후들이 있다가 결론이 학교 밖이 되는데 그 과정에 누구도 케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백을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고 아마 교육부도 이런 면을 충분히 수긍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잠시 이석했다가 와야 돼서 그다음 것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김한규 위원 저도 죄송한데 2시에 10분 정도만 이석을 해야 되는……

○소위원장 신현영 우선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하는 게……

○김한규 위원 저는 확인만 하고 싶었던 거고요. 내용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첫 번째 법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법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교육지원 사항 하위법령 위임 그리고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 관련된 학교보건법을 내서 교육위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건강검진에 대해서 위탁 근거를 공단으로 이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보건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아까 여가부가 의견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위탁 근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수

정안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의견 제시하시겠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 11조의2(건강진단) 2항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걸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마련한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회의자료 안에는 없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제안의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1페이지에 있는 제11조의2 2항이 김미애 의원님 법안인데 이것을 문구만 바꾸어서 건강보험공단을 특정하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김한규 위원 근거법하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경희 위원 그런데 11쪽 아래에 보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결국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느 한쪽에서 실시를 해야지 중복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우려하시는 부분은 담당 국장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물론 그런 중복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나오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었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법적 체계에서 볼 때도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근거 규정을 만드는 입장입니다. 물론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만들어서 더 확실하게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명령 규정을 두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려는 이중으로 되거나 뭔가 혼선이 있거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3항에 보면 여성가족부령으로 디테일한 것을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데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으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가부가 시행규칙을 만드시니까 그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실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정경희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대로 가기로 하지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아까 여가부차관님께서 제안하신 11조의2 2항에 대한 제안으로 해서 건강진단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의 지원센터 연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여가부 의견하고 좀 다른데요. 정경희 의원님 의견하고도 약간 다르고, 임종성 의원안처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하고 고등학교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는 생각이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의무를 예외로 규정하는 건 되게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다 학교로 복귀하는 게 맞고 저희도 그런 목적을 갖고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는 분들, 특히 이런 센터에서 본인에 대해서 연락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동의 없이 연락하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성 의원안처럼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정경희 위원** 제가 이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나눈 그룹군을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고등학생 때의 인원이 초·중학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시기가 고등학생 때예요.

그런데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저울질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돌봐 주는 것,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과 필요성 둘 중에 저울질을 해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보다 교육기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까 여가부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저도 부연을 해서 의견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의 이슈인데요.

현행법에도 보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보완책은 있다. 게다가 임종성 의원안도 보면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확인 못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임종성 의원안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여가부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단체 의견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은 안 나와 있어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관리가 좋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회피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건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교육부에서도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으로 개인정보의 침해를 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학교밖지원센터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연계를 해 줘야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소위원장 신현영** 동의하는 입장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다음에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종성 의원님 안에 대한 교육부의 검토의견은 정보 연계 대상자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장기결석이라든가 행방불명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연계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신중 검토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가부는 정경희 의원님 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려하시는 정보 침해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주 이내에 개인의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시 과기하는 부분들 이렇게 장치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나요?

○**조은희 위원** 제가 좀 할게요.

저는 정부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 65%인데, 지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부분은 정부 차원의 대안이 있으니까 일단 바로 센터에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우선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원안대로 또 정부 의견대로 통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지만 뭐 무서워서 뭐 못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법의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부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사실은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침해다라는 현장의 불멘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의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은 그러면 정경희 의원님 안으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정보완의 제안을 해 주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경희 의원님 안으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세 번째 법안까지 정경희 의원님 안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을 못 해서 다른 위원님 오시면, 아마 10분 후에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 한 분만 더 오시면 그때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72)

(14시04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참고자료 27쪽입니다.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형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고의무 대상과 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19세 미만의 자 중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는 연 나이 개념을 사용 중인데 개정안은 이를 만 나이 개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참고로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실제적인 변경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법상 이들도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피해자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보호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시기가 도과하였고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의무 기관 안내 등 제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3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여가부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도 마찬가지로 시행일이 도과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당 법안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저희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추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452)

(14시06분)

○소위원장 신현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참고자료 35쪽입니다.

현행법 28조의2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은 7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어 오히려 벌금형보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임원의 자격제한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 42쪽, 43쪽 참조해 주시고요.

또한 개정안 시행 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법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의 적용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정 대안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지금 조문이 마련된 게 있나요? 42쪽에 나와 있나요?

수정의견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항도 추후에 한꺼번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346)

(14시08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46쪽입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 현황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47쪽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너무 빨리하고 있는 것 같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정경희 위원 저는 이것 한 가지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보다 통보로 하는 것이 상호 협력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청소년 담당 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예전에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서 하위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가 됨에 따라서 대등한 그런 입장이고 또 보고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수평적 관계로 보면서 통보,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바꾸었습니다.

○정경희 위원 보고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통보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관 김권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5)

(14시10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7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50쪽, 개정안의 배경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각 개별법의 규정은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법 적용 관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각 개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인허가의제, 과징금 관련 조문들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51쪽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이의신청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52쪽 하단입니다.

현행법 제14조의3은 긴급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5항 과징금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인허가의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현행 행정절차 사항과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59~63쪽에 정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3년 3월 24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 일자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우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14조의3 이의신청 규정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일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보호법의 54조 5항 과징금 규정 정비안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행법의 과징금 규정이 행정기본법에서의 과징금 연기 및 분할납부 가능 사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인허가의제 규정 정비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

하면서 자구 수정 말씀해 주신 그 내용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 시행일 관련해서도 수석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본법과 체계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7항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의결하겠습니다.

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8)

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79)

(14시13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8항 그리고 9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67쪽입니다.

현행 제12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되어 기존의 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누락된 여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성희롱 실태조사를 제외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들 실태조사는 질문의 대상이 구분되어 통합 실시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69쪽은 각 법률에 기재된 실태조사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자구 수정 의견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여성폭력지원시설의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또는 사용·수익을 규정하려는 것인데 이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에서 동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3쪽 하단입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범위가 방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신현영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에 통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자료제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의 중앙관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제3호는 여성폭력사건 관련 재판을 통하여 작성된 법원행정처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는 여성폭력사건 관련 재판을 통하여 작성되는 통계자료는 없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에 관한 통계는 현 시스템으로 불가하지만 법원행정처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추출 가능한 통계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고려해서 89쪽, 90쪽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제2항은 현행대로 두고, 90쪽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를 3항으로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법률 개정에 따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여성가족부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 후 6개월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항목 및 구조조사 방식이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하고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조사의 표본 수가 과소해서 신뢰도 확보에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자구 수정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2쪽 여성폭력지원시설의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 관련해서도 아까 행정안전부 말씀이 있기는 하셨지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지원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기재위 통과가 불확실해서 이번에는 삭제하고 다음 회기에 재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발의를 하신 노용호 의원실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자료 명시를 하자는 신현영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6조의 중앙관서에 법원행정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자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다른 실태조사의 통합 근거 마련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로 여성폭력지원시설의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근거 마련은 우선 노용호 의원님이랑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저는 무상 사용에 대해서 이 건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도 아니고, 그런 피해시설이 부족하다는 기사나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또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의견 주시지요.

○정경희 위원 노용호 의원님 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가 개정할 수 없는 법이라고 보고요. 지금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용호 의원께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빼도 좋다. 본인이 이 법을 발의할 때 이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빼고 나머지 법안은 살려 달라는 취지로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양의원영 위원 법 어디에 제한이 되나요?

○정경희 위원 본인이 이 부분을 철회하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부분 없이 우리가 심의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확인 차원에서 국유재산법의 어디에 저촉되는지 양의원영 위원님이 질문하셨거든요.

○정경희 위원 아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양의원영 위원 제가 여가부에 여쭙았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자료 72쪽 하단에 보시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조나 관련 법에서 타 법에서 법률로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예외되는 시설들을 다 나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용호 의원님께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발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아직 기재위에 상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저희 법만으로는 개정이 어렵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설령 한다 하더라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좀 모호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한다면 똑같이 규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금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 심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 부분은 다른 법하고 충돌이 되니까 빼더라도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그냥 가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신현영 예, 맞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요.

○조은희 위원 잠시 헛갈렸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세 번째,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요. 8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여성폭력 통계자료 명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혹시 차관님, 경찰청이나 아니면 검찰청의 통계 공유시스템은 앞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해하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 최성지 지금 경찰청하고는 저희가 계속해서 통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현실적으로 여성폭력 통계만 따로 떼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명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범죄사실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수정안으로 범원행정처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됐는데요, 의결하고 진행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석하셔야 되는 분들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때 빨리 하고 넘어가세요.

○소위원장 신현영 이것은 한꺼번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경희 위원 지금 했던 것 9항까지를 한꺼번에 먼저 의결을 하고.

○소위원장 신현영 다 의결하자고요?

지금 8항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다 됐거든요. 동의하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통합해서……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항부터 3항까지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희 위원 원안을……

○소위원장 신현영 제가 원안을 다 읽어 드리면 좋을 텐데……

○정경희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는……

○소위원장 신현영 원안은 원안대로 그리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는 거거든요.

○정경희 위원 4항에 수정이 있나요? 4항은 수정이 없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시행일.

○정경희 위원 시행일,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확인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항은 이의 없으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심사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8항·9항입니다. 2건의 법안인데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결을 했고요. 다시 10항부터 심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오신 위원님도 계셔서 1항부터 9항까지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49)**

**1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4)**

**1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76)**

(14시27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
까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
정법률안 1건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
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의 법률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94쪽입니다.

윤영석 의원안은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지난 소위에서 논의된 적이 있는데
당시 논의사항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법률
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이고 매년 시행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3년 주기로 개정
하기보다는 기본 5년으로 두자는 것이 정부 의견
이었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반대의견을 제시하
지 않으셔서 당시 의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검토의견은 현행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소관 7개의 법률은 모
두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는 점 등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쪽입니다.

정점식 의원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예산 확
보 및 지원 확대 방안과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
려는 것입니다.

101쪽입니다.

예산 확보라는 표현에 대해서 기재부의 반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예산 확보’를 ‘재원조
달 방안’으로 변경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05쪽입니다.

자구 수정 의견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조해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수정하였고

요, 4호는 개정안 그대로입니다.

106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가부에 따르면
2024년도에 다음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다
고 합니다. 따라서 특례보다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기본계획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10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김영선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고령화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 필요성이 증가한 것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
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기본계획 수립주
기 단축하는 안은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것
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다음, 기본계획에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
안 등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
을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으로 수정 반
영한다는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 4호에 신설되는 교육 및 홍보 관련해
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해당되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라
는 의견입니다.

여가부 소관 9개 법률 중에 교육 및 홍보를 법
률에 명시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안 부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관련해서 개정안 수정 수용하자는 수석전
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
시를 하자라는 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주기 단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5년 안인데 신중 검토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김미애 위원**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5년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것만 분리해서 3년으로 하면 다른 것들도 전부 다 오락가락해서 더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보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우선은 5년 주기를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정점식 의원안인데요. 100페이지 보면 안 제5조 기본계획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도 재원조달 방안으로 하는 것이 유사 입법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서 수정안이 맞다고 보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정경희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께서 수정안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김한규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10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 부칙도 이미 여가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수정의견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고요. 13조 김영선 의원님 안의 연령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에 대한 안입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 연령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사실은 저희가 비쟁점부터

올려 가지고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한 가지……

○**소위원장 신현영**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점식 의원 개정안 중에 교육 및 홍보를 여기다 하자라고 하는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0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소위원장 신현영** 101쪽 개정안의 교육 및 홍보.

○**김미애 위원** 4호 신설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4호에 대한 부분을 개정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 부분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은 개정안을 반영하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안은 이 부분은 수단과 방법에 해당되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 법에 넣어서 안 될 이유가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 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성부가 되게 부담을 느낄 만한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100페이지에 나오는 3의2 4호, 5호 이것들을 신설하지 말고 시행령에다가 그냥 두자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김한규 위원** 저는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체계상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 법에 넣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요,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그냥 하지요.

○**김미애 위원**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정경희 위원** 법령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원래 개정안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예, 개정안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10항부터 12항까지 3건의 법률안 중에서 제11항 그리고 제12항,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06)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44)

1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9)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98)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47)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149)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339)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602)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301)

(14시34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1항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13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시 상담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서비스 대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5쪽의 수정조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 또는 미성년 한부모에 대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별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경 의원안은 미성년 한부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미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등에 근거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임신부와 만 2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이규민 의원안과 고영인 의원안은 각각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부모교육 등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그리고 자녀양육, 정서안정, 교육훈련 등을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지원 내용이 현행법 제17조의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영 의원안은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인데 가정방문이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규정보다는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은 가정방문서비스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조문은 120쪽부터 125쪽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일은 여가부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우측 중간 부분입니다.

현행법 제6조는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이미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미성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연구로 규정하는 경우 오히려 현행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 20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 이들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33쪽에 경미한 자구 수정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제6조제3항은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8쪽입니다.

이 법의 지원 대상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이 법의 지원 대상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하고 위기임산부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지원 연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 제명과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 여성가족부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위기임산부에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등 주거·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라는 점, 위기임산부에 대한 내용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추가하여 제명 및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위기임산부를 잠재적 한부모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지자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 개정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위기임산부의 정의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다른데 법률 상호 간 동일한 용어는 되도록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53쪽입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위기임산부를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상담, 거주, 생계,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 양육,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 간 중복이나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을 별도로 이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개정안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4개 교육지원 중 1개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자녀 돌봄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는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과 달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중 1개만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 현재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별도 사업은 없고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돌봄과 자녀 돌봄지원에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1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 제17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3쪽에 보면 각호 외의 부분에서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조은희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68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주체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을 규정하여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맞추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113쪽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시 상담서비스 의무 제공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김미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소위원장 신현영 예, 말씀하세요.

○김미애 위원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의견 하기가 너무 번거로우니까…… 분량도 꽤 되잖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잘라서 할까요?

○김미애 위원 거기에 이견 없으면 좀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하나씩 하면서 정부 측 의견

들으면서?

○김미애 위원 예, 그게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우선 첫 번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의견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15페이지에 있는 5조의3의 수정의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주경 의원안에 대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이규민·고용인 의원안에 대해서는 별도 개정 없이 신현영 의원님 안으로 병합해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신현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자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해당 안건은 이규민·윤주경·고영인·신현영 의원님 안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의견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애 위원 저는 검토의견과 정부 측 의견이다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수정의견대로 또 아까 말씀하신 원안은 원안대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우선은 통합해서 의견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17조의 항별로 의견을 여쭙보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119쪽을 보면 기재부가 가정방문 지원서비스 신설은 재정 여건이나 사업 방식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재정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담당 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한부모한테 가정방문서비스를, 상담이라든가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게 되면 청소년 한부모가 약 3000가구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가정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얼마가 추계되느냐고 묻는데 판매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추계 방식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추계한 예산은 현재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예산을 검토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예, 협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로 신청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했고요.

○조은희 위원 협의를 했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예.

○조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20페이지 17조부터 보는 건데요.

사실 큰 틀에서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디테일한 것들이 의원님들마다 조문에 들어가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이런 부분들에 다 삭제 의견을 낸 부분은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17조에 보면 신현영 의원안의 ‘가족지원서비스를 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 저는 어차피 희망하는 사람은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방법을 원치 않는데도 의무화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량규정으로 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예, 저도 그러면 수정안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7조의4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수정의견 외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고영인 의원님 조문들이 있는데요.

120페이지 하단에 17조의4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 4항부터 고영인 의원님께서……

○양의원영 위원 17조의4가 뭐지요?

○소위원장 신현영 120페이지 하단부터 뒤까지.

○양의원영 위원 여러 의원들의 여러 내용이라서 제가 못 쫓아가네요.

여기서 의견이 어떤 겁니까? 뭘 빼자는 거예요?

○소위원장 신현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7조의4의 의미?

○양의원영 위원 뭘 빼고 뭘 넣자는 거예요?

○용혜인 위원 121페이지에 있는 4항·5항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의견이고요.

○양의원영 위원 아예 4항·5항을 다 삭제하자고요?

○소위원장 신현영 예, 고용인 의원님 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은 삭제의견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자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 다음에 하자는 것은 뭐예요?

○김미애 위원 결론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전부 다 법률에 명시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입법자가 판단할 영역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다음에 또다시 개정해야 돼서……

○양의원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4항·5항을 추가하는 것은 하지 말자 그런 것이고 그냥 기존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이 생략되어 있어서, 기존이 뭔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에 의거하면 가족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드리자면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양의원영 위원 그러니까 1호부터 3호까지만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6호까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6호까지 있습니다.

17조(가족지원서비스) 각호, 6호까지 있습니다.

○양의원영 위원 여기는 4·5·6을 고영인 의원이 제시를 하신 건데? 17조의6 말고 17조의4 말씀드리는데 거예요. 4에서 기준이……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11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에 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 6개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17조의4가 그런 것에 포괄되기 때문에 굳이 세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양의원영 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에 있나요?

○소위원장 신현영 117페이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17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그 항목 4호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양의원영 위원 이 4에 ①·②·③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양의원영 위원 ①·②·③이 뭔지 여쭙본 거예요, 이 1·2·3·4·5·6을 여쭙본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고영인 의원은 4 안에 ①·②·③ 외에 ④와 ⑤를 추가하셨잖아요. 그래서 ①·②·③의 내용이 뭔지 여쭙본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 그런 항입니다.

2항은 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고요.

3항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산 마련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 말고 여기 4하고 5는 정기적인 것을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자는 얘기고, 5는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고, 6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기 앞의 4호가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인데 ①·②·③은 자산 마련에 대해서 알려 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주거와 자산 마련.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자립지원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자립지원.

그리고 4하고 5는 오히려 가족 관계에 대한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정서적 안정, 학업, 교육훈련, 취업 등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해서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아이와 한부모 쪽 하고의 관계를 잘하려면 만 2세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양의원영 위원 저는 앞에서 말한 자립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큼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에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애 키워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3살 또는 만 2살까지는 누군가가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의 한부모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①·②·③보다 이게 덜 중요하니까 빼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7조(가족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님 안 자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지원서비스를 한다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담아서 개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한 의견으로 이것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것은 다른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양의원영 위원님은, 고영인 의원 17조의4 ④·⑤ 삭제의견을 가족부가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④·⑤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고, 사실 과연 그것으로 갈음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니까요. 가정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전체의 큰 틀에서 얘기한 것이고 가정방문서비스를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1·2·3·4·5·6이 있고 그중에 4호 중에서 고영인 의원이 특별하게 더 생각한 것은 만 2세까지 어쨌든 가족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정방문서비스할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법에 넣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넣는다고 특별히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방문서비스할 때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이런 내용을 좀 넣자라고 한 정도인데 그것을 굳이 빼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어디에 중복돼 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지 그러면 동의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필요 없이 너무 자세하다든지.

그런데 내용을 보기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17조의4에 해당되는 더 적합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쭙어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 부분을 삭제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법 17조(가족지원서비스) 항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신현영 의원님……

○양의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못 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실 때 17조에 1·2·3·4·5·6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①·②·③·④·⑤예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연관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1에서 5호까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4호에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도 있고 1호에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도 있고 6호에는 포괄해서 기타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너무 구체적이면 오히려 그때그때마다 법을 또 바꿔야 되는데 고영인 의원안 4항에 보면 2세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다음에 3세까지 하면 또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입법으로 하기보다 17조에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는 것이 그때그때 대처하기도 수월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추가설명 하신다 그러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2세까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등에 근거해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서…… 116쪽에 있는데요.

○양의원영 위원 어디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16쪽 오른쪽 하단입니다. 모자보건법 10조 등에 근거해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만 2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상담 및 양육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기에 굳이 중복되게 안 넣어도 되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것은 윤주경 의원안이니까……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시든지. 고영인 의원안을 삭제하는 대신에 윤주경 의원안에 합쳐서 어떻게 하자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이것을 삭제하자, 너무 세부적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본 거예요.

다른 것은 그러면 안 세부적이냐 그리고 다른 것과 중복이 되느냐 이렇게 여쭙어봤는데…… 다른 것도 여전히 세부적인데 그만큼 이것도 중요하다 제가 보여져서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나, 중복되는 것도 없고 다른 것과 비슷하게 세부적인 것이냐 그러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여쭙본 거예요.

윤주경 의원안하고 합치는 거라면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든가.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의 답변이 효율적으로 명쾌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제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7조의4는 수정의견으로 가는 것으로……

○양의원영 위원 아니, 지금 얘기가 안 된 거잖아요.

윤주경 의원안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저희 수정의견은 사실 17조의4나 다른 의원안을 다 삭제하고……

○양의원영 위원 다 삭제하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그리고 17조에다가 후단으로 ‘이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 봤는데요.

○양의원영 위원 어느 경우? 이 경우가 어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 경우가 17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17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그 각호가 1호부터 6호까지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굳이 4의 ①·②·③은 왜 만들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4요?

○양의원영 위원 4에 기존의 ①·②·③이 있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지금 그 개정안들은…… 4는 자립지원인데 조금 안 맞는 느낌이 있어서 17조의4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양의원영 위원 아니, 제 말은 기존 법에 ①·②·③이 있잖아요, 4 안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게 필요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예,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자립지원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자산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양의원영 위원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가 자산이나 자립지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래서 지금 17조의4에 넣기보다는 17조에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면 ①·②·③을 그렇게 하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아니, 17조의4는 건드리지 말자는 겁니다.

○양의원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쭙보는 게 ①·②·③이, 17조의4는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인데 ①·②·③에…… 아까 여가부에서 설명해 주신 게 자산, 자립지원에 대한 상담이었잖아요. 그게 적절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것보다 ④·⑤가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에 더 적절하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20쪽에 보시면 여러 수정안이 있어서 좀 헷갈리게 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족지원서비스는 현행 17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17조 후단으로 신설하자는 게 수정의견이고요. 17조의4는 지금 말한 것처럼 자산에 관한 내용이라 여기에다가 방문서비스를 넣는 게 조금 맞지 않다, 17조에 넣자라는 게 저희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양의원영 위원님,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살리자 아니면 삭제하자.

○양의원영 위원 저는 오히려 고영인 의원안의 ④·⑤가 17조의4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법 ①·②·③이 가족 관계 증진에 해당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족 관계 증진에 해당되는

것을 ④·⑤로 넣었는데 그게 세부적이라고 뻔다면 ①·②·③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안 맞다고요.

○소위원장 신현영 김한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한규 위원 양의원영 위원님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조는 가족지원서비스고 17조의4는 자립지원이니까 성격이 달라서 방문을 할 때 가족지원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하고 자립지원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하는 게 원칙적이지 않느냐는 취지신 것 같고 고영인 의원……

○양의원영 위원 아니라니까. 17조의4가 가족 관계라니까. 자립지원이 아니라 가족 관계.

○김미애 위원 양의원영 위원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반대로 이해하시는 것 같고 김한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양의원영 위원 117쪽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할 때……

○김미애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본문을 보시면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마저 말씀드리면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가정방문하면서 17조에 따라서 교육, 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은 사실 별개 안 들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17조의4의 자립지원 관련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안 해도 이번에 신현영 의원안을 토대로 수정의견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신설하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수정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7조의4까지 됐고요.

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입니다.

○김한규 위원 그런데 공포 후 6개월이나 1년이나 이것은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6개월로 했는데 수정의견은 1년인데, 이것은 그냥 1년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저는 1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여가부에서도 1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저희는 예산 등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공포는 몇 페이지지요?

○**김한규 위원** 125페이지.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17조의6 하려고 그러는데 왜 벌써 가셨어요?

○**김미애 위원** 부칙이 원안하고 수정안이 다르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 그것이란 연결이 돼서.

○**소위원장 신현영** 순서대로 하시지요.

122페이지 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이것은 현행으로 그대로 가면 되겠지요?

윤주경 의원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용혜인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7조의8에 대해서 의견 주시지요.

이규민 의원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이고요 123페이지입니다.

○**용혜인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 그냥 수정의견 안에 일괄 동의하는 것이고, 125쪽 부칙의 시행 날짜만 지금 정하면 돼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25페이지 하겠습니까.

125페이지 부칙,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 주시지요.

○**정경희 위원** 고영인 의원님 안은 3개월이고, 3개월, 6개월, 1년 중에서……

○**소위원장 신현영** 의견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1년으로 가는 것이……

○**소위원장 신현영** 1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정부가 1년이라고 얘기했는데,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렇게 1년까지 필요합니까? 6개월로 불가한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산 또 하위법령 마련이라든가 구체적인, 저희가 하고 있던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7페이지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윤주경 의원안인데요.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이미 현행법에 ‘3년마다’ ‘만 24세 이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떼어 내서 미성년자만 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위원님들이 브리핑을 한 번에 다 들어 가지고 조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 측에서는 동의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으로 동의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정경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안의 경우에 현행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20세에서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누락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현행 법령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제4조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돼 있고 거기에 나이, 미혼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나라는 규정이 없어도 지금 다 커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나이별로 다 나와 있나요?

○**김한규 위원** 예.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의견을 취합해서 현행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직업 알선 시 희망, 적성 등 고려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한부모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희망·적성·능력·직종을 포함합니다.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개정안의 자구 조정

을 포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 근거 마련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업중단 현황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개정안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한규 위원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개정안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에 위기임산부 포함 등인데요.

이 부분도 양이 많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위기임산부에 특화된 상담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가부 의견은…… 수석전문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출산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미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일부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가부 입장은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위기임산부 정의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보호출산지원법과 법리 상호 간 동일한 용어를, 되도록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정의 규정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부합되도록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보면 현행법이란 개정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수정안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조문별로 심사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안을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자, 빼지 말고 규정하자는 부분이고요.

정의에 대해서 여가부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4조(정의) 8호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라는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안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김미애 위원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부안은 따로……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안은 왜 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정부안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깔아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4조 8호에다가 다른 법률에 따른 그 용어를 그대로 쓴다, 그 얘기를 넣자는 거잖아요.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맞는 내용인데, 원래 꼭 그런 용어 정의 규정이 들어가야 되나요? 안 들어가도 개별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보통 해석하지 않나요? 뭐 있어도 좋은 조항인데……

○소위원장 신현영 김미애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미애 위원 지금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위기임산부 정의 규정이 있으니까 저는 여가부 안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야지 수요자인 국민이 혼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위기임산부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굳이 이것을 안 넣고 일반적인 지원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반법 개념이기 때문에 제명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더 위기임산부들에게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명은 그대로 둔 채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자, 그렇게 가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제가 사실 법안 제명 할 때……

수정안을 빨리 깔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미리 제출을 못 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빨리 준비해서 깔아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신현영 제가 법안 제명을 제안한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한부모가족은 다 위기임산부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조문들이 이 법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항이나 아니면 체계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포함을 한 거거든요.

○정경희 위원 오히려 그게 더 명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임산부를 한부모로 볼 것이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위기임산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여기서 다루어야 될, 규율할 문제지 이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과연 법리상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규정을 별도로 여기에서 법제화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법안 배경을 말씀드리고 용혜인 위원님 발언하세요.

사실 우리가 영유아 시신유기 사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랑 여가부랑 TF 만들어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여가부가 작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한부모지원법에다 같이 포함을 시킨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용혜인 위원 저는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랑 정부 측 의견 적힌 것 보면서 정부 측 의견이 부동의라고 이해하고 오늘 회의장에 왔는데 제명과 정의 규정을 제외하면 여가부에서는 나머지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의 규정은 받고 제명은 안 받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했습니다.

○용혜인 위원 정의 규정은 동의하고 제명만 부동하는 것이고 나머지 조항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상담하는 내용, 상담

전화 그 부분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래서 지금 정부의 수정안이 복사되어서 배포가 될 예정인데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별로 좀 논의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김한규 위원 여가부 입장이 좀 불투명한데, 저도 용혜인 위원님하고 같은 이해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동의한다고 하니까 그 사각지대가 뭔지 여가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을 쥐야 저희가 논의가 빠를 것 같아요. 너무 법안이 많은데 여가부가 동의를 하는 것이면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요, 그냥 추상적으로 사각지대에 동의한다고 하시지 말고.

○소위원장 신현영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여가부는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좀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정확히 해야지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위기임산부든 누구든 한부모를 지원하는 일반법이잖아요. 위기임산부는 위기임산부 특별법을 지난해에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 용혜인 위원님이나 정경희 위원님도 굳이 동의어는 아닌데, 동의어는 아니지만 위기임산부는 한부모가족이면 지원이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안 해도 한부모가족 일반에게 다 지원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 위기임산부 규정이 필요하면 여기에 넣어야 되겠지만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위기임산부의 근거법인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여가부가 입장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고.

위기임산부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여가부가 할 역할이 미진한 게 있다, 그게 뭐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해 와서 그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곤란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계속 심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준비를 잘 해 오세요. 그래야지 여가부가 할 일이 생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죄송합니다.

○정경희 위원 ‘노’라는 말을 못 하고 예들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지요.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입장 제시를 해 달라는 김미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따로 규율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정경희 위원 끝났어요. 말씀하세요.

○김한규 위원 여가부가 자료 정리해 오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다른 것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것 오늘 안 하면 다시 못 할 것 같으니까. 정말 사각지대가 있는지는 한번 판단해서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그 정도는…… 다른 논의 하는 동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위원장 신현영 깎아 주세요. 지금 복사가 되어서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조은희 위원 저도 하나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신현영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기임산부가 임신 상태일 경우에 생계비나 정부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어렵다, 이게 사각지대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담당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에서 지금 현재 위기임산부도 한부모복지시설까지 다 입소를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법에서 위기임산부한테 지원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임신한 중에는 생계비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법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설치의 근거는 없고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도 지원은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게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저희가 받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법에 들어가 있는, 그 법하고도 중복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문 정리를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용혜인 위원 상황이 이런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출력이 반 정도만 된 것 같거든요. 주신 자료에 홀수 번호 페이지가 없습니다. 제 것만 그런가요?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용혜인 위원님 것만 뒷 페이지가 복사가 안 되어 있나요? 저는 앞뒤로 되어 있는데 용혜인 위원님은 여기가 안 되어 있네요. 다시 교체해 주시고요.

(「저도 없어요」 하는 위원들 있음)

다시 출력해 오시고요.

○조은희 위원 잠깐 5분 동안 쉬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신현영 너무 힘드세요?

○김미애 위원 아니, 정리 좀 하게……

○소위원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하시느라고 조금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3시 20분인데 3시 30분에 다시……

○정경희 위원 40분에 합시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점점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경희 간사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3시 40분에 하고 또 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여가부는 제대로 정리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미흡한 부분 다시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의하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신현영 의원안까지 논의하다가 끝났는데요.

지금 수정안은 다 배포가 된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신현영 저희가 정회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요. 정부 수정안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대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임산부들이 지금 현재 법으로 들어오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명을 저희가 받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목적, 국가 등의 책임도 저희는 받지 않는 상황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페이지 4조(정의) 규정에서 8호 위기임산부 정의 규정은 포함을 하되 정의 규정은 개정안하고 조금 다르게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정의 규정에 가져오는 게, 일치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로 정의 규정을 바꾸고자 하고요.

5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사실은 아까 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는 8호 규정을 포함을 하게 되면, 현재 임신부가 임신 중에 받지 못하는 생계비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혜택이 있어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8호를 수용하는 입장이고.

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서 앞에서 이미 대상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례에서는 출산 전 임신부는 삭제해도 되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조의4부터 5조의5 관련 사항은 한부모가족으로 충분히 위기임산부가 포함이 될 것 같아서 신중 검토 입장이고요.

실태조사, 6조의2 지원업무, 9조 그다음에 13조, 14조까지는 한부모가족이면 다 해당이 되고, 다만 위기임산부 고용 촉진하는 것은 출산을 하면 한부모가족으로 똑같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임신 중에는 보호 중심으로 받고자 해서—개정 실익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조의3(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한부모가족은 위기임산부도 포함해서 다 상담을 하지만 위기임산부의 상담지원은 신현영 의원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책 안내, 출생 후 자녀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상담, 출생 후 취업지원 기관에 대한 안내 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면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8조의3은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현재 위기임산

부도 범위에 포함이 되어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받는 실익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나머지는 다 중복규정이어서 우선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예, 맞습니다.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도 같은 맥락에서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센터로 설치하는 것은 개정 실익이 없어서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부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용혜인 위원님 아니면 다른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법안 발의자로서 해당 정부의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위기임산부 지원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산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 강화하는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영 의원안까지 했고.

16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을 분리하는 안입니다.

정부의 입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 대한 돌봄지원 분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문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가 제1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법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돌봄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돌봄지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내용이 중복되게 지원되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수정안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63페이지에 수정의견

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16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이므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과태료 부과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추가하는 안입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 개정안은 행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동일해서 행정제재처분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의견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13항부터 21항까지 9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여성가족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9)

2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83)

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18)

2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1)

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00)

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8)

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6)

2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0)

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7)

3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0)

3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8)

3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5)

3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6)

3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31)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36)

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99)

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392)

3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17)

4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32)

4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38)

4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01)

4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72)

4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287)

4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319)

**4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520)**
(15시56분)

○소위원장 신현영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46항까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금 비오는 날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양육비 당사자분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먼저 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음주운전 가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말씀하세요.

○김미애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추운 날에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오랜 기간 이 법안 통과를 열망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 법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래도 제가 안팎으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대부분 컨센서스가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주요한 게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겁니다. 감치명령이 있는 것을 감치명령을 삭제하는 건데 그것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바빠서 이석하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도 갖추어야 돼서 그렇게 먼저 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혹시 이석하셔야 되는 위원님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데요. 김미애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조금 일찍 가셔야 된다는 거지요? 양의원영 위원님도.

혹시 시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한규 위원 저도 합의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하면 좋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먼저 하고, 그것 하고 또 계속하다가 혹시나……

○조은희 위원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김미애 위원 그래서 그래요. 효율적으로 하자는……

○정경희 위원 보충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23개인가요?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23개를 묶어서 대안을 하느니 지금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가 있는데 이행원을 독립시키자, 분원을 설치하자는 것 하나 그다음에 소득·재산 조화에 관한 문제 하나 그다음에 대지급,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심해서 받자는 내용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에 있어서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 큰 네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쟁점이 적으니까……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분들이 2월 초에 영하 17도일 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5주째 시위를 하고 계시고 양육비 이행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서 보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심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또 나머지 것들이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9번 항이 바로 그 제재조치 완화거든요, 절차 간소화.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137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심사자료 2권 137쪽입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개정안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139쪽입니다.

이용선 의원안에서는 제재조치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확대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절차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감치명령 불이행 단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현행보다 제재조치가 급격히 강화될 수 있다는 점,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신설된 지 오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들이 제재조치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치명령 요건에 준하는 의무 불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주 의원안은 이행명령 등을 받은 후 3기 또는 30일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개정안들은 이행명령 등을 위반하면 바로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법원의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2024년 1월 10일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바 있으므로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절차 완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2쪽입니다.

김미애 의원안 제21조의5제1항은 명단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공개정보에 사진을 추가하려는 내용인데 조세 체납 또는 임금·대금 체불 시의 명단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등의 타 입법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 명단공개에 궁극적인 목

적이 양육비 채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 및 이행계획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단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 단축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공개 정보에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격권 위배 소지 및 기타 사인 간 채무 불이행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43쪽입니다.

유정주·양경숙 의원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감치명령 요건 해당 여부를 법원 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행 대비 정당한 사유 유무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정경희 의원안은 의무 불이행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이행명령 등을 받은 후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제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처분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하여 현행과 유사하게 불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첫 번째,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제재조치를 완화했을 때 이 부분이, 제재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처분에 관한 내용임을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육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제재조치 절차 자체가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제재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소요기간이 길고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되는 인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조치 추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출국금지 대상 확대, 제재로서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22년 8월부터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이미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 실익이 적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재조치로서 명단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을 단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신중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단공개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현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및 출국금지 요청 전 의견진술기간이 10일 이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개 심의 시 의견진술기간도 동일하게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제재조치에서 명단공개를 하게 될 경우 정보에 사진을 추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입법례가 매우 한정적이기도 하고 해외 입법례도 유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돼야 논란이 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정경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양육비 법안심사 관련해서 제가 이행원위원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이 법안에 관련해서 보충의견 주시면 저희가 법안 개정하는 데 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행관리원장님 의견 주십시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재조치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재조치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물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사실상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하는 양육비 채권자들은 이미 그 이전에 이삼 년 이상 양육비

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한 이후 감치명령까지 가는 데 또 이삼 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감치명령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인용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감치명령을 제재조치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순간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정부 측 의견 들어 보면 각 항목별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수정의견도 있는데 이 사안도 사실 정부 측 수정의견이 쪽 정리된 게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문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정안 자료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예, 배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소위자료 145쪽에 여가부 조문을 일단 넣어 놔거든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런데 저희가 조문별로 심사를 하려면 여러 의원님들 법안 플러스 수정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저희한테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 배포를 하시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 바이 건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이랑 정부 측 수정조문이 어떤지 브리핑을 듣고 나서 논의하도록 할까요?

21조의3에서 수정안은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행정제재조치의 간소화 조문인 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은…… 감치명령 이전의 이행명령에 해당되는 게 68조 1항 1호 그리고 3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 3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치명령 이전에 행정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했고, 다만 무조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바로 제재조

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제재 조치를 해야만 되는 사람인지는 대통령령으로 한번 더 정하는 사람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하나 안 하고 한꺼번에 합니까?

○**소위원장 신현영** 하나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서 먼저 할까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동일한 사항이어서요. 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같은 맥락으로 21조의4는 출국금지 요청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소송법 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되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하지 않은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출국금지는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한테 출국금지 요청하도록 그렇게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1조의5(명단공개)도 같은 맥락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 1항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나 아니면 명단공개도 이전에는 감치명령 이후에 시행하였는데 감치명령을 생략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사전에 제재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여가부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여가부에 확인 좀 할게요.

여가부가 한 수정조문이 '68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잖아요. 1호가 이행명령이고 3호가 감치명령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김숙자** 1호는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고 3호는 일시금을 30일 동안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김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지금 여가부 수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행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기존의 안들보다 좀 약화된 안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일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김한규 위원** 그런데 저는 대통령령으로 뭐를 정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대통령령 없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다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통령령에도 별 내용이 없거든요. 21조의3의 4항에 따른 대통령령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절차적인 것인데 별 얘기가 없고, 이것은 완전히 요건을 다시 대통령령에서 더 정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만약에 제외해야 될 게 있으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법에 아예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꼭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회에서 다시 재량으로 뭐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서 하는 것이라서, 물론 법원의 감치명령 절차보다는 짧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연된다는 불만이 나올 것 같아서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조금 더 여가부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제재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처랑 상의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대상으로서, 감치명령의 삭제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 컨센서스를 이루거나 한 게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행관리원 원장님, 사실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상자가 너무 좁아져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정하지

않고 모든 대상으로 확대했을 때 발생하는 우려 점은 무엇이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만약에 그것을 조금은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컨센서스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전문가적인 견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제가 여가부 수정조문을 지금 처음 봐 가지고 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대상자를 완전히 확대해 놓는다면, 이게 애초에 자꾸 나오던 게 부당결부금지원칙을 걸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비 채무를 지급하는 것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 출국금지를 하는 것 이런 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부당결부금지원칙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애 과장님이나 제가 법무부에 가서 했던 얘기는 이미 입법화될 때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한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입법화가 이미 됐다, 그런데 감치명령을 넣고 실행을 해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감치명령을 없애서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게 해 줘야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행명령까지만 하고, 이행명령까지 가는 것도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하나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원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행명령까지 가는 것으로 넣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법무부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겨우겨우 법무부하고 합의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우려는 있는데 감치명령을 넣는 것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법안인 것 같기는 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의원님들이 처음에 해 주신 대로 이행명령까지만 가게 해 주시면 정말 좋기는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여기 조사를 한 것 보면 감치명령 신청해서 확정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것은 맞습니까?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김미애 위원 139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 해에 감치명령이…… 작년에는 335건인데 이렇게 감치명령을 많이 발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감치명령이 떨어져야

제재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맞아요? 정확해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저희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과거보다 지금 실무에서는 감치명령이 상당히 많이 발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16년 변호사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했는데 본 적도 없고 저도 해 본 적 없거든, 감치까지. 이행명령 신청하고도 송달이 안 돼서 별의 별 고생을 하고 몇 년씩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지금 실무가 감치명령이 이 정도라면 감치명령이 정말로 많이 나는 것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이게 맞아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그런데 이게 감치명령 재판 신청을 한 건하고 확정된 건이 다르고, 지금 확정 건이 9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위탁소송과 직접소송을 합해서 하는 소송 건수는 한 500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확정된 게 이것이니까……

○김미애 위원 지금 김한규 위원도 계시지만 감치명령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현행법도 21대 국회 들어와서 통과시킨 것이잖아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김미애 위원 그것이 지난 한 이삼 년 시행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 안 된다 해서 다시 발의를 해서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치명령이 이렇게 많은 게 맞는지 저는 의문이고.

그리고 여가부 수정조문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미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냥 이행명령까지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고 이행명령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제재조치로 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또 한 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이행명령에서 바로 위원회 심의해 가지고……

또 돈 나오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바로 제재를 하지 않거든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도 피신청인 내지 채무자에게 수차례 이행하도록 법원이 기회를 줍니다. 재판기일도 몇 번씩 연장해 줘요. 송달 안 돼 가지고 이런저런 별별 수단 다 해 가지고 특별송달돼서 겨우 기일 잡혀도 가서 탄소리하면 또 시간을 주고 그러는 게 현재 실무인데……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아서 바로 제재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번 걸리지거든요. 거기에서 정말로 부득이한, 악의적인 채무자가 아니라면 바로 제재조치 안 할 텐데 굳이 뭐 하러 또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22대에 또다시 개정안 나와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뻔히 이런 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지금 하는 건데 굳이 여가위에서 양육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왜 비양육자를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아동학대범이에요. 망입하잖아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을 당연히 양육해야 되는데 몇십만 원을 안 주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이행명령까지 가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치면 됐지 뭘 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가부 수정안이 아니라 의원님들 다수안대로 저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나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거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저도 그것에 준하는 보충되는 질문인데요, 이행위원장님께 여쭙어볼게요.

제가 낸 법안하고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라는 게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맞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가부에서 낸 수정조문안은 뭐냐 하면 이행명령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 위원회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채무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김한규 위원 이게 이행명령 받은 사람입니다.

○정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행명령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쪽이 더 느리겠네요?

○김미애 위원 68조가 이행명령을 받았을 때지요.

○정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절차가 더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맞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들려고 여러 의원님들이 내셨지만, 결국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건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을 따져 보면 제가 낸 안이나 김미애 의원이 낸 그것이 더 시간이 빠르지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맞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더 빠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애 위원 제가 하나만 덧붙이면……

이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관님, 위원회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육비심의위원회가 이행원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있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가정법원에 있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어요. 전부가 서울에, 위원회에 보내야 되는 건데 그 업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사전 의견조회라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회의 심의 의결, 위원회의 업무 부담 늘어나면…… 이제 법원에서 감치할 것을 위원회로 다 떠넘기는 꼴이거든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래서 정리하자면 김미애 위원님은 굳이……

○김미애 위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하면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굳이 뭐……

○소위원장 신현영 감치명령은 삭제하고 이행명령 받으면 제재조치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신 거고요.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그러면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심의 의결은 거칠 필요가 없……

○김미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대로 가고, 제가 그것은 말을 잘못했어요. 감치명령을 이행명령으로 바꾸자 그겁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미애 위원님 안은 여가부 수정조문에서 굳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저희가……

○김미애 위원 제가 정정을 할게요. 방금 발언한 것을 정정할게요.

이행명령을 받고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다 이겁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것은 기존의 프로세스인 것이지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여가부 수정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1페이지 제가 수정을 해 보면 이것은 그대로 가고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아니요.

○김한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빼고 그냥……

○김미애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정리를…… 제가 아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사소송법 64조 1항이 이행명령이잖아요, 그게 감치명령이 아니라. 현행에는 1항이 ‘1항 1호·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인데 감치명령을 삭제하고 ‘64조 1항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조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안하고 김미애 위원님 안하고 똑같아요.

○양이원영 위원 보면 64조하고 68조가 다르거든요. 68조는 3기 이상 지나도 또는 30일 이상 지나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64조는 급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명령이 되었을 때 바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미애 위원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양이원영 위원 아니, 위원회 심의 의결은 둘다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앞에가 64조냐 68조냐, 저는 더 짧은 게 좋다. 그래서 64조로 하는 게 맞다. 동의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김미애 의원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부에서 보완설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괜찮은데 단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라는 문구는 저희가 개정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내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처의 의견들이 다……

○양이원영 위원 무슨 의견이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어떤 의견이냐면 법무부에서는 법원의 객관적 요건의 구비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절차가 빠르고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양이원영 위원 64조도 가정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래서 헌법상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설득을 해서 그래도 이런 정도로까지는 저희가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 대안을 마련한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법무부의 반대 말고 저희가 아까부터 실제 내용을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이 없고 실제 내용이 뭔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계속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못 하시고 법무부 얘기만 하세요. 법무부 얘기는 참고를 하시는 것이고 여가부의 의견이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할 만한 내용이 뭔지를 알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소위원장 신현영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법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는 논의를 지금 여가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데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

○**용혜인 위원** 그랬을 때 법무부의 그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는 대통령령으로 검토되고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법무부의 의견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 이 입법 취지를 전혀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오늘 갑자기 뿔 하고 나온 안은 아니니까 법무부와 다른 정부 부처들과 대통령령 수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정하자라는 것을 합의한 게 있는지, 그게 아니면 사실 법무부가 반대하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면피하고 법무부 의견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법무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대로 들어 주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법무부에서는 시행령을 하면서 이런 감치명령 없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좀 좁혀야 된다는 의견이 실린 것으로 저희는 짐작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령이 향후 개정된다면 감치명령을 받거나 또는 채권 확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나 강제징수 회피 우려 등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관한 사람들에 한해서 감치명령 없이 이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면 그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나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입법의 취지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지금 저희가 완전히 이상적인 조건으로 실효성에 대한 확보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절차들에 그래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아주 완벽한 바람직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내에서, 여가부 혼자서 이런 제도를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한 협의조건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대안으로 저희가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조은희 위원님, 새로운 의견이신가요?

○**조은희 위원** 예.

○**소위원장 신현영** 말씀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약간의 중재의견.

○**소위원장 신현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저는 여가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열 걸음 가려다가 한 걸음도 못 가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진전을 가는 게 좋지, 다시 법사위에 가서 깨지는 것보다.

○**소위원장 신현영** 사실 저희가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은 하나같이 다 간소화해서 완화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법사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정부를 설득하고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데 어느 안으로 가야 실제로 정말 당사자들이 실효성 있고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은희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은 그래도 간소화를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셔서……

차관님,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을 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축소되고 협소돼서 결국에는 혜택받는 사람 거의 없을까 봐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을 정할 때도 뭔가 인풋을 좀 더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서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선은 감치명령 삭제하고 그냥 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님들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정부 내 난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조은희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이 방안들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했고, 우려해 주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시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좁혀지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한 가지 의견을 여쭙보고 싶어서…… 유정주 의원안도 정부는 수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좀 갖고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혜인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약간 다른 얘기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러

의견과 우려들에 대해서, 어쨌든 3기 이상 30일 이상 안 한 사람들에 한해서 제재조치를 하는 유정주 의원안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유정주 의원안을 포함한 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추가가 된……

○**용혜인 위원** 유정주 의원의 안은 대통령령으로 넣는다, 그러면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정주 의원안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용혜인 위원**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혜인 위원** 이것보다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감치명령은 삭제하는 건데 대통령령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냥 서류만 보고 합니까, 여기에서 무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의 의결 과정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내 차관님이 위원장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서면심의를 많이 하는데 사전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어서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가면 거의 특별한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 제재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맞습니다. 의견진술 기회 같은 것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심의 의결권은 좀 더 신중한가에 방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

렇지 않다면 지금 채무자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몇몇을 유형화해서 그런 경우에 바로 통과해서 심의 의결기구로 보내겠다 그런 취지로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김미애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도 법사위에 가면 법원행정처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할 것 같으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공포 후 6개월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전에 국회에 시행령, 대통령령에 대해서 미리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6개월 정도 주시면 협의를 거쳐서 마련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위원님들 더 추가의견 없으면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효성 있는 간소화가 실제로 피해자들에 와닿기 위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21조의3에 대한 수정안인데요. 여가부 수정조문 말고 다른 안으로 김미애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약간의 자구 수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위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그리고 출국금지 그리고 신분공개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음주운전 가해자 포함하는 안건으로 송기현·지성호 의원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자료 3쪽입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범위에 음주운전 가해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양육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만 포함하고 있어 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 자녀, 음주운전으로 인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고 있던 비양육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므로 음주운전 피해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특히 의견 없으시면 첫 번째 해당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신설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

해 민법 제397조에 따른 법정이자율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자율 연 12%를 적용하여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재 민법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청구 사례는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채권 추심을 위해서 또한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동의하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예.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신설도 저희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7쪽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8쪽입니다.

개정안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신설하여 검사가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의 지급 등 일정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재범방지, 범죄예방과 회복적 사법을 이루기 위해서 더 다양한 조건들을 개발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담당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 등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양육비 지급채무는 민사상 채무로 강제집행 등 정해진 법과 절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8조 등에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제적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기 등 다른 재산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21쪽입니다.

참고로 법무부는 양육비 지급 여부를 형사 처벌의 법정 조건으로 삼는 것은 다른 재산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양육비 미이행이 현재의 경제적 수입, 재산 상황 등 참작사유나 피의자의 질병,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기소유예 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법무부 의견처럼 다른 재산 범죄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또 23년 5월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 건수가 1건인 점 등도 고려해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그다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 1건밖에 없다 그러셨는데 그 1건이라는 게 언제, 얼마 동안…… 1년간 1건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23년 5월 기준 이행원 설립한 이후로……

○정경희 위원 이행원 설립 이후에 여태까지 1건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러면 이 법률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네요.

○김미애 위원 그리고 감치명령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또 조건을 줘서 기소유예를 하겠다. 사실은 그 감치명령을 법원이 발하기 전에 기회를 주거든요, 빨리 납부하라고. 그러면 그때 이미 충분히 시간을 벌었는데 또 조건부로

하겠다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는 공감하는데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현행법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27조 2항 2호 단서에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지만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피해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유도 내지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신설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긴급지원과 생계급여 및 생계지원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여 병급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과 한시적 긴급지원 두 제도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두 제도의 병급 허용 시 실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병급 허용 시 추가재정 소요 추계액은 연간 5984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25쪽입니다.

다만 현재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긴급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므로 대지급제도 도입 여부 등과 함께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지금 많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같이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그렇게 같이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런데 오늘 대지급제도 애

기가 되기는 할 텐데 대지급제가 실행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긴급지원에 대한 강화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미애 위원** 제가 볼 때 시기상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윤석열 정부도 공약으로 냈고 각 당에서 전부 다 발의를 한 상황이고 그렇게 오래지 않은 동안에 정비가 되면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아마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 같이 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오늘 대지급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이어서 오늘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필요하다면 긴급지원에 대한 논의를 추가로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보류하고요.

30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32쪽,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입니다.

현행법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들은 이행관리원을 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독립하게 하고 분사무소도 설치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33쪽 하단입니다.

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설치하고 지역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 재정소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동 법률 제정 당시 이행관리원을 진흥원에 두도록 한 입법 취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및 비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조직 구성이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관련 문제는 저희가 그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기관의 업무 운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관계부처의 협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이행관리원에서 하는 직접소송이 수요자한테는 이행율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근무하는 변호사분들이 먼저 충원돼서 일하실 수 있는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을 하면서 기관 독립의 목적을 살리되 정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분사무소 설치도 저희가 폐쇄적으로, 이런 기관의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설득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개정안 취지에 부합되도록 협의가 끝난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변호사 규정 및 소송 업무 절차와 관련해서는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률지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동일하게 변호사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라든가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부 내에서 의견 수렴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저희가 빨리 그 부분들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이행관리원장님 의견 먼저 듣고 그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행원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분원 설치에 대한 것은 제쳐 두고 일단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할 경우에 양육비 이행이 얼마나 빨리 추진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독립기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소송 하는 경우가 위탁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행률이 2.5배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들의 숫자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17년 기준으로 23명까지 있던 것이 지금 저 포함해서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숫자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후면에는 사실은 처우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실망을 해서 한 해에 5명씩 나가기도 하고, 사실은 변호사가 나간 자리를 일반직원으로 뽑아서 타 부서로 배정하기도 하고 1년 이상 변호사를 채용해 주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한가원 내 기관 운영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정관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한 인력·예산·조직에 관해서는 이행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냥 절차적인 규정으로 여겨버리고 이행원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행원장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필요한 조직조차 마음대로 하나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여성가족부 내에 있다 보니까,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내 산하기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낮고 거기에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들도 그 처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법률구조공단도 사실은 많이 받는 게 아닌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의 처우에 비해서도 거의 반이나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처우가 도저히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부터 분리 독립이 돼야 법률구조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에 맞는 처우가 보장되어야 변호사도 채용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양육비 이행률도 직접소송을 많이 해서 제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우선 용혜인 위원님 하고 김미애 위원님.

○용혜인 위원 이행원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독립기관화 관련되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비용이 더 드는 것

이야 당연한 건데 독립기관화 자체가 더 추가로 재원을 들여야 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맞습니다.

○용혜인 위원 주된 반대 논리가 재원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어서…… 실제로 기재부도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독립기관화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재원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은지 혹은 예산 부담이 얼마나 더 예측이 되는지, 실제로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있을 것 같은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이미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재부로부터 사업 승인 인력으로 99명을 배정받았고, 지난해 3월에 이전에 퇴임한 한가원 이사장님과 인력에 관한 문제는 협의를 해서 지금 경영본부에 업무 지원으로 나가 있는 19명의 인력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이 되는 순간 다시 양육비이행관리원 쪽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하던, 경영본부에서 일하던 인력이 돌아와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이 된다면 경영 업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산도 인력에 맞춰서, 운영예산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나누면 되는 부분이고, 일하는 공간도 지금 21층과 24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간을 분리한다든가 정 안 되면 사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같이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분리 독립하는 데는 시스템을 분리하는 비용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추가적인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이지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소위원장 신현영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정말 하는 일 많고 중요한데 그 기능과 역할에 비하면 처우가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가 일할 때 최소한 자부심은 느낄 정도의 처우는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기는 열악해서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대리, 신청인이 대부분이에요. 신청인 대리로 올 때는 정말 달라요. 일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위탁

해 가지고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들도 역시 잘하기는 하지만 양육비 이행 관련된 업무에만 특화된 분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거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원 충원이 안 될 정도니 얼마나 열악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비 이행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결국은 양육비 대집행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집행 잘 되도록 해 주는 게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이지요. 양육의무자가 먼저 양육하도록 해야 되고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 못 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에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업무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데 이 안에서 제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프라이드도 못 가지고 쳐우도 나쁘고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분사무소 이런 것은…… 이미 각 지역에서 소송지원, 면접교섭 이런 건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추후의 일이고 그것은 다른 제도와 같이 논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은 정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건물 안에서 층수만 달리하고 완전 별개로 하면 되지요, 이 업무만 제대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일하는 분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목소리도 잘 내고.

결국은 집행률이 위탁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게 탁월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사무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오 늘은 의결했으면 합니다.

○정경희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예, 간사님 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의견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4년에 처음 생겼지요, 원장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15년에 생겼습니다.

○정경희 위원 15년에 생겼어요? 그런데 법

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법이 2014년에 제정됐습니다.

○정경희 위원 2014년에 제정됐다고 하는데 그 법이 제정될 때 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기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기재부가 반대해서 진흥원 안에 위치하게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인력효율화정책에 따라서 2개의 실질적인 기관인데 통합 설치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가 10년 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정책서비스가 확대되는 시점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이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문제로, 통계를 내 보니까 한 100만 명 이상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아동까지 다 합치면 150만 명에 이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정책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흥원 밑에 있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계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만큼 독립시켜서 각자의 업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진흥원하고 관리원하고의 업무가 무슨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업무의 영역이 전혀 다르고 구성원들도 전혀 다르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행관리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가정진흥원은 건강가정사 등 가족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반대의견을 보면 독립 시 재정소요가 수반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추가적인 인력이나 추가적인 예산 부담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예.

○정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독립시키는데 있어서 반대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법안도 여러 개 나온 만큼, 이렇게 법안이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은 다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가 된 것이니까 독립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실제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저도 이 쪽지로 질의를 했고 장관님도 오케이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가족부 뭐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신중 검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피해자들이 얼마나 소송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이행관리원 꼭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열리는……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인데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이 법안이 통째로 법사위로 가고 그다음에 본회의로 갈 텐데요 절차 간소화랑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독립법인에 대한 부분을 기재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분원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용혜인 위원님.

○용혜인 위원 여당 위원님들이 든든하게 기재부 설득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정부 쪽에서……

○소위원장 신현영 용혜인 위원님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차관님 하세요.

○용혜인 위원 여당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기재부 설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까 질의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비용 그 자체는 많이 들지 않으니깐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양육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었고 분명히 의지가 있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사위 심사하기 전에 한 가지는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반대논리에 대한 반론으로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랑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독립기관화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에 따른 업무 역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등을 한다는 점은 분명 법률구조공단이랑 다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회의록에 남아야 법사위 심사 때 보시니까요—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사실은 양육비 이행지원 관련해서는 2007년부터 여가부에서 법률구조공단에 위탁을 줘서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원스톱 기관으로 설립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 2015년에 25%에 불과하던 양육비 이행률이 지금 4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 사실은 소송이 한 건 한 건 일회성 소송으로 끝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한 번 이용자가 신청을 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가 들어왔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소송 절차에 따라가면서 그다음 절차가 뭐가 이루어질지 이용자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가장 유리한 소송이 무엇인지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용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 사건을 제발 위탁사건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용자들이 간절하게 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감치명령이 지난 다음에, 감치명령을 전제조건으로 제재조치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이행원 밖에 있는 변호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겪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치소송 후 감치명령 인용이 꼭 필요한 이유가 제재조치로 가기 위함인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들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감치명령이 인용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취하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이용자들이 와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과 업무가 겹친다는 부분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신중 검토 의견을 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독립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여가부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부처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

분히 공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도 국회예산정책처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기관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원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해야 되면 재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추계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저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다 설득을 시키면서 이것들을 개정안에 반영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검토가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조은희 위원님, 마지막 발언 하십시오.

○조은희 위원 저는 차관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 의견대로 분원, 분사무소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하나를 먼저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행관리원을 독립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법안을 통과시키는 와중에 추가적인 협의를 여가부에서 하세요. 그리고 법사위 넘어가고 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또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명심은 하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 대한 것들을 대표로 나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안은 하나 우리 뜻을 관철하겠다 이런 거예요?

○정경희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수정하시기에는 지금 만약에 법제화를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분원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기관화시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세요, 정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기본적으로 선지급이나 대지급에 대한 제도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

진하겠더라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여가부 혼자서 하기는 힘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독립기관이라든가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지 그 제도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정경희 위원 그때를 언제쯤으로 추정하시는지 그것을……

○김미애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대지급이든 선지급이든 이것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여건 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미애 위원 결국은 여기서 통과시켜도 위에서 막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 마나고 여기에서 논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가야지 제대로 된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대지급제가 시행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건강가정진흥원은 같이 그 밑에 있을 성격이 아니에요. 제도를 도입할 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큰 독립기관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산하기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리시켜 놓는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꼭 이것을 조금 더 늦춰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제 생각에는 여가부가 보이는 성과가 많지 않아서 위원님들 늘 우려하시는 것에, 질책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가부 혼자만의 제도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선지급제도가 일단 도입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서 다음 법안소위 심사 전에는 정부의 협의된 의견을……

○김미애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독립해도 크게 문제없어 보여요. 이렇게만 해요. 분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정리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새로운 의견인가요? 아니면 같은 의견이면 제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용혜인 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이라 이것은……

○정경희 위원 두 가지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신현영 대지급까지 하고서 의결하려고 그러는데……

○김미애 위원 그것은 오늘 안 돼.

○조은희 위원 그것은 오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이야.

○소위원장 신현영 우선 독립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다 지금 각 당의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가위가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제는 차관 체제로 여가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여가위가 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면서 여가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선은 독립하는 것에 대한 조문은 살려 놓고 분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하는 것으로서……

조문대비표가 4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차용을 하고 어디까지를 제하면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42쪽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안이 있는데 보면 표현이 대동소이해서 일단 1항·2항은 체계·자구 정리를 하면 유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은희 위원 거기다 맡길게요. 통과시키고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과 이렇게 말기면 돼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께 위임할게요.

○소위원장 신현영 위임하시겠어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께 일임할게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조문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몇 가지 논해야 될 추가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신현영 의원안 49쪽의 7조의3하고 51쪽의 11조의2 내용이 다른 안과 다르게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받을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몇 페이지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49쪽의 7조의3은 이행관리원 변호사고요, 51쪽 11조의2는 소송업무 절차 등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할지 제할지에 대해서 이행관리원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직무대행 전주원 이 부분은 빠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이것 제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서 저희가 자구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신 것 같아서 의결을 하고 다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22항부터 46항까지 25건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에서 제재조치 절차 완화와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에 관한 항목이, 제33·34·35·37·42·45·46항에다가 40항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지요? 총 8개 항인데요, 이 부분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4명이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5명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5명이에요?

○정경희 위원 심의하는 것하고 의결하고 다르지요. 회의는 4명이 할 수 있는데 의결은 5명이에요.

○용혜인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의결을 못 하네요.

○조은희 위원 대지급하는 것 저희도 찬성해요.

○소위원장 신현영 그러면 위원님들 가시기 전에 대지급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기록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대지급과 선지급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저도 벌써 1년 전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재원이 확보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를 줄 것인지. 그런데 보통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 그다음에 재판이나 조정의 경우에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3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00도 있을 수 있고 200도 있을 수 있고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집행권원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게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여가부에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지요? 용역 결과 왔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3월 말에 결과보고서가 완료되는데……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보고 우리가 제대로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저 또한 대지급에 대한 필요성은 너무 강력하게 느끼고 있고 21대 국회에서 꼭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되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사 간 합의해서 추후에 다음 소위를 열면서 그때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을 하고 컨센서스를 사전에 준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지급을 하고 선지급을 하고 정부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징수 근거를 아직 마련 못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총선 끝난 다음에 4월 말이든 5월 초든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해 보십시오.

○**소위원장 신현영** 정경희 간사님께서 4월 말이든 5월 초든 꼭 총선 끝나고 곧바로 열자고 말씀하신 만큼 저희 최선을 다하는……

○**조은희 위원** 기록을 남긴다니까 저도 말씀을…… 조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계속 애

기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사례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과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익어야 되니까 정말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을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옳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여가부에서 꼭 긍정 답변을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요.

양의원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양의원영 위원** 저희 당도 이게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꼭 21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 얘기를 하시는데 용역은 보통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한두 달 지연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혹시나 3월 달에 안 나오더라도 지금 추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예산을 잡아서 보니까 한 해에 많이 들어도 770억 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저희가 어쨌든 저출생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아동의 기본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 위원들이 다 공히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21대 국회에서 꼭 우리가, 다른 상임위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 여가위는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공히 다 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옹혜인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의원실에 바로바로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민주당에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 있고 빠르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가부의 법안심사 준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다음번 심사 때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고, 특히 이 양육비 관련 된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꼭 협의할 사항이 아니더라도 하지 마시고 기재부든 어디든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협의를 만들어 주시고 합의를 가지고 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약속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니

대통령의 약속이…… 이제 임기 만 2년 채우고 3년 차로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기에는 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가부가 최대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게, 대지금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남겼고요. 사실 금융·재산 조회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추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회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컨센서스를 미리 모아서 나머지 법안들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그리고 각 당에 노력을 공동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간사님들께 꼭 4말 5초에 회의 잡아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법안소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추가 발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차관님, 그래도 새로 신입돼서 첫 번째 법안소위를 하셨는데 소회 말씀하시고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여야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 유념하고 그다음에 제도 실행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우려하면서 법률 개정안을 저희가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다음 소위에는 검토안을 갖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소위에 참석을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또 기회 삼아서 다음번에는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여가위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정경희 위원 진행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신현영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미 애	김 한 규	신 현 영	양이원영
용 혜 인	정 경 희	조 은 희	

○청가 위원(1인)

장 경 태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지 민
입 법 심 의 관	김 정 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 관	신 영 숙
기 획 조 정 실 장	황 윤 정
권 익 중 진 국 장	최 성 지
청 소 년 정 책 관	김 권 영
가 족 정 책 관	김 숙 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직무대행	전 주 원